청원 원문

[청원의 취지]

-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
-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노인장기요양시설 정원은 232,235실이며, 현원은 179,526명으로 공실이 52,709개으로 22.69%입니다. 2023년 노인장기요양시설 공실율은 25%가 에상되며 이것은 5개 사업체중 1개는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

[청원의 이유 및 내용]
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"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
- 법 제31조(장기요양기관의 지정》제3항(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) 제4호(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)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"장기요양급여 수요"를 구체적으로 수립할 법규가 필요 합니다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3 (사업구역별 장기요양기관 총량의 산정 등》를 별첨과 같이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